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3
----------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관내 청소년육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칭 변경

[ 변경 전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변경 후 ]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다.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라.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안 제5조)

마.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안 제13조)

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4조~안 제2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3.10.24.~ 2023.11.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의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 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평창군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 제2장 청소년육성 정책

**제4조(청소년의 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행사
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2.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3.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4.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확충,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5.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
6. 청소년의 해외 탐방·교류 및 다른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
7.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보호·안전에 관한 사업
8. 청소년 자활·자립 지원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4.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2. 인재육성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
4. 평창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소년 관련 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 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 담당 공무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이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단체·기관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4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보호 및 지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해당 읍·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학교,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5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5.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지원 연계 활동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 활동 등
5.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와 범죄예방 활동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에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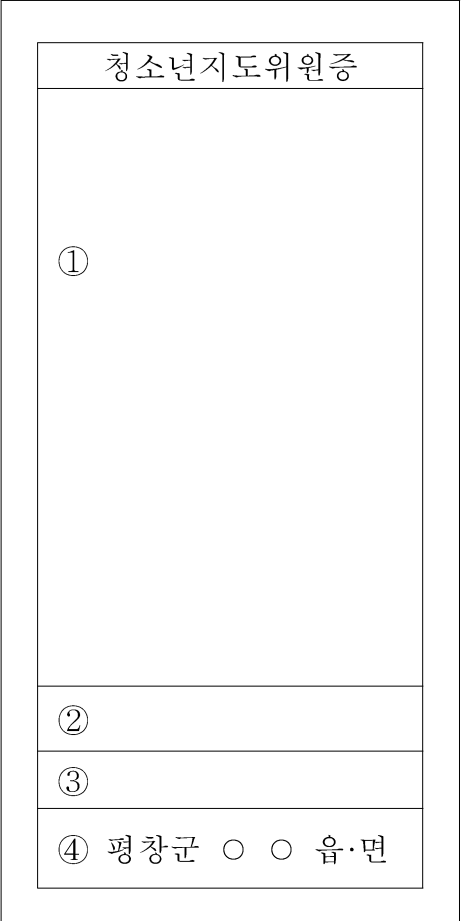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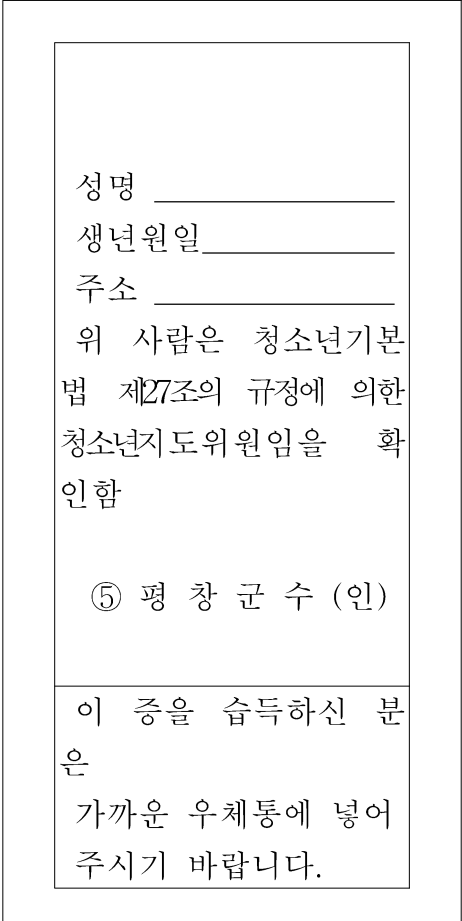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지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계산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18조 관련)

(앞면)	(단위:cm)	(뒷면)								
	0.3 1 4 8.1 0.75 0.75 1 0.3									
4.9x7.5										
		<table border="1"><tr><td>0.3</td><td>1.7</td><td>3.2</td><td>0.3</td></tr><tr><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5.5</td></tr></table>	0.3	1.7	3.2	0.3	5.5			
0.3	1.7	3.2	0.3							
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sup>2</sup>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 x 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기관명(읍·면)
- ⑤ 평창군수 직인 날인

# 관계법령 발취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 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0. 5. 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5.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 6. 22., 2020. 5. 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 2. 3., 2020. 5. 19.>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0. 5. 19.>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20. 5. 19.>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5. 19.>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인재육성과장 여 정 은
연락처	(033) 330 - 2020